##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그-- 1

제 출 일 : 1996. 12.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가. 이 조례는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한 공무원자녀가 면학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5. 1. 6자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 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1996. 10. 25자 대법원 판결(96추 107)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 가. 대법원 판결문(96추 107) 사본
- 나. 조례안과 상위법 규정 비교
- 다.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 판결문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에서 우리시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자녀 장학기금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내무부에서 동 조례가 관계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 바 「무효판결」됨.

## ◇ 개 요

○ 판결일 : '96. 10. 25

○ 사 건 : 96추 10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등

○ 당사자 : 원고 내무부장관, 피고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주 문 : 피고가 1996. 6. 17에 한 인천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

기금설치및운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 ◇ 판결문 주요내용

--- 〈 조례안 제 2조 〉

학비 지급대상은 소속 공무원의 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대상 으로 한다고 규정(우리시 조례 제 2조와 같은 내용임)

## 관계상위법 규정

- ①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 이 법 기타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한정

### 판시내용

- ① 학비를 보수로서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도 자녀의 학비를 장학기금으로 대신 지급하여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 지급,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자녀에 한정하여 학비를 지급하면, 이는 지역주민중 대학생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특혜를 베푸는 조치로서 형평에반하고 공익에도 부합되지 아니함.

— 〈 조례안 제 3조 〉 ————

장학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으로 조성한다고 규정(우리시 조례 제12조와 동일한 내용임)

## 관계상위법 규정

① 지방재정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 판시 내용

- ① 이는 장학기금의 형식을 통하여 소속공무원 개인에게 기부·보조하는 등으로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라 할 것임.
-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제 6 편 내무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 ●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 1995. 1. 6 ] 조례 제2429호]

개정 1996. 2. 23 조례 제2548호

-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자녀를 위한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공무원 자녀"라 함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이하 "시 청"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자녀를 말한다.
- 제 3 조 (장학회의 구성) ① 장학회에 회장 1인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회장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명하는 실·국장과 2명이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촉할수 있다
- 제 4 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7인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된다. <개정 96. 2. 23 조례 제2548호>
  -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 제 5 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장학회의 년간 운영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7 조 (감사) ① 장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감사는 감사실장이 된다.
  - ②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 6 편 내무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 1. 장학회의 운영 및 기금관리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 8 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 선발대상은 공무원 자녀중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신입생은 출신 고등학교의 최종학교 성적이 전체의 30/100이내 인자. 다만, 검 정고시 출신자는 평균득점 70점이상인 자.
  - 2. 재학생은 전학기의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 3. 기타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중 교내외의 각종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 9 조 (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장학회 기금의 형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10 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액은 기금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장학금 지급액은 해당 학기 납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등지급 할수 있다.
  - ③ 장학금은 년2회 지급하되 매학기 등록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기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제 11 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1.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 2. 휴학 기간중일 때
  - 3. 기타 시장이 장학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 제 12 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출연금
  - 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제 13 조(기금의 예치 및 관리) ① 기금의 예치는 수익성과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기금의 관리는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 제6편 내무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

③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 다

제 15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조례 제2429, 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6년 12월 일

내 무 위 원 회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보고서

1996년 12월 내 무 위 원 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6. 12. 14, 대전광역시장

2. 회부일자 : 1996년 12월 16일

3. 상정일자 :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1996. 12. 19)

상정, 심사, 원안가결

## Ⅱ.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내무국장)

- 1. 제안이유
- 가. 이 조례는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한 공무원자녀가 면학의 기회를 잃지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5. 1. 6자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 나.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1996. 10. 25자 대법원 판결(96추 107)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Ⅲ.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 장홍진)

- 본 폐지 조례안은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우수 자녀의 면학분위기를 위한 복지후생적 측면을 고려해 95년 1월 6일 제정 시행되었으나
- 인천광역시의 동일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96년 10월 25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 제정 시행되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IV. 참고사항

- □ 대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에서 우리시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내무부에서 동 조례가 관계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바 「무효판결」됨.

### ◇ 개 요

ㅇ 판 결 일 : '96. 10. 25

ㅇ 사 건 : 96추 10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등

ㅇ 당 사 자 : 원고 내무부장관, 피고 인천광역시의회의장

ㅇ 주 문 : 피고자 1996. 6. 17 에 한 인천광역시공무원자녀

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은 그 효력이 없다.

## ◇ 판결문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학비 지급대상은 소속 공무원의 대학에 취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 (우리시 조례 제2조와 같은 내용임)
- ㅇ 관계상위법 규정
  - ①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이 법 기타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 자녀학비 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에 한정

#### ㅇ 판시내용

- ① 학비를 보수로서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도 자녀의 학비를 장학기금으로 대신 지급하여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 지급,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한
- ②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일부를 출연하여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 한정하여 학비를 지급하면, 이는 지역주민중 대학생 자녀를둔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특혜를 베푸는조치로서 형평에 반하고 공익에도 부합되지 아니함.
- 조례안 제3조 장학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우리시 조례 제12조
  와 동일한 내용임)

#### ㅇ 관계상위법 규정

① 지방제정법 제14조: 지방자치 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 ㅇ 판시내용
  - ① 이는 장학기금의 형식을 통하여 소속 공무원 개인에게 기부·보조하는 등으로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라 할 것임.
  -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V. 토론요지 : 생략
- Ⅵ. 질의 답변요지 : 생 략
-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